

2026

주택관리사보 도시재정비법

엠북 자격증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신설, 개정 내용 반영
- ★ 45분 완성

도서명 : 도시재정비법

ISBN : 979-11-7393-262-5

발간일 : 2026-06-09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5,000원



도시재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p12)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p25)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p41)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p49)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p62)

제7장 보칙(p77~82)

[약어]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부령은 국토교통부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또는

시, 군, 자치구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특별시장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참고) 주택관리사보 2차 단답식 문제는 약어

대신 정식 용어를 사용해야 함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도시 낙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사업을 광역적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정함

-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정의

가.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는 도시
낙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 추진하기 위해 지정

1) 주거지형

- 노후/불량 주택, 건축물 밀집
- 주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필요

2)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부도심 등 도시기능 회복 필요

3)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 대중교통 이용 용이
-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토지 고도이용, 건축물 복합개발 필요

나. 재정비촉진사업(이하 촉진사업)은

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 3)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5) 시장정비사업
-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다.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은
촉진지구의 촉진사업을 계획적, 체계적
추진하기 위한 촉진지구 토지 이용, 기반시설
설치 계획

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마. 우선사업구역은

- 촉진구역 중 촉진사업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다른 구역에 우선해 개발
- 촉진계획으로 결정

바. 존치지역은 촉진지구에서 촉진사업할 필요성이 적어 촉진계획에 따라 존치

사.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아. (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
- 2)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 3) 도시개발사업은
-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자
- 4)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은
- 토지/물건, 권리 소유자
-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자. 기타: 대도시시장